

서울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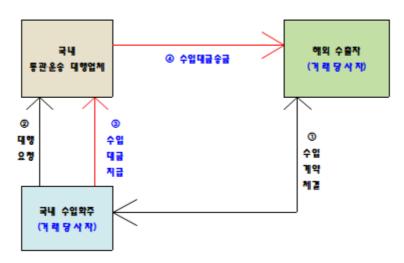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수출입기업의 대금 지급시 유의사항 안내

- 1. 항상 관세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2.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제3호, 동법 시행령(지급 또는 수령 방법의 신고) 제30조 제1항, 동 고시 제5-10조(신고 등)와 관련, 거래 당사 자인 거주자가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을 하거나, 거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 가 당사자인 비거주자에게 지급을 하는 경우는 미리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제3자 지급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3. 최근, 우리세관에서는 국내 수입화주(거주자)가 해외 수출자(비거주자)와 거래를 하고 그 대금을 거래 당사자가 아닌 대행업체(통관·운송 대행 역할)를 통해 해외 수출자에게 지급하면서 제3자 지급 신고를 하지 않아 제재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3자 지급 신고가 필요한 거래〉



4.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로 제재처분을 받는 수출입 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귀 회 원사들에게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서

수신자 한국관세사회, (사)한국무역협회

주무관 **남소영** 주무관 이칭현 외환검사과장 박일보 조사2국장 **최문기** 협조자

시행 외환검사과-2262 (2023. 10. 12.) 접수

우 0605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21, 서울세관 (논현동) / www.customs.go.kr/seoul

전화번호 02-510-1874 팩스번호 02-2015-7858 / sheisnsy@korea.kr / 대국민 공개

청렴한 당신, 행복한 국민, 신뢰받는 관세청